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사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수만)

-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구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행정규제대상을 삭제.
  - 마약법 개정으로 마약법 제13조제2항('97. 12. 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98. 10. 2)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
- 나. 주요골자
  - 공부 등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제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
  -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므로 삭제함.(안 제7조제2항)
  - 마약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안 “라”마약에 관한 사항)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라’목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수수료 내역 삭제는 마약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폐지되어 상위법 개정때 따른 정비이고, 제4조 공부 등의 열람제한규정과 제7조제2항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삭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불필요한 중복 및 주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사항으로 이는 행정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1999. 7. 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구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행정규제대상을 삭제.
- 마약법 개정으로 마약법 제13조제2항('97. 12. 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98. 10. 2)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

## 2. 주요골자

1. 공부 등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제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
2.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므로 삭제함.(안 제7조 제2항)
3. 마약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안 “라”마약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마약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합의사항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없음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0종)을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9종)으로 하고, 동표 중 “라”목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0종)			제3조(종류 및 요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9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가~다(생략)			가~다(현행과 같음)		
라. 마약에 관한 사항 (1)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1건	100원	“라”목 삭제	삭 제	삭 제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삭 제		
제7조(징수시기)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 의결